

야생동물관리 정책 및 입법동향과 시사점

1. 야생동물관리의 필요성

A.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확산

- 1) 야생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발.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 사스('02년), 메르스('12년) 모두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처음 전파된 것으로 추정
- 2)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인간 전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원성 감염증으로 추정
- 3)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이 더 잦아지고 다양해지는 이유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B. 무분별한 수입 및 개체 증식에 따른 유기 및 생태계 교란 우려

1) 야생동물 유입 현황

[표 1] 2018년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통계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합계
야생동물	20,194	3,320	180,220	325,471	529,205
수입허가(환경부)	1,461	2,602	142,073	49,564	195,700
자유 유입	18,733	718	38,147	275,907	333,505
가축	164,729	798,464	-	-	963,193
합계	184,923	801,784	180,220	325,471	1,492,398

임상검사 5일
 「가축전염병」정밀검사 대상
 검역 미실시

※ 출처 :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공동)

- a.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유입된 해외 야생동물은 약 53만 마리에 육박
 - b. 유입 개체의 96%가 파충류 양서류로 검역 대상에서 제외
 - c. 검역 대상인 포유류와 조류도 가축전염병 중심의 검사 시행.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밀검사는 임상검사기간 5일 동안 증상이 없을 경우 미 실시
- 2) 야생동물 유기/유실 사례 및 현황
- a. 유기/유실 사례
 - ① 올해 7월 27일 SNS를 통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토끼와 닭, 길고양이까지 사냥하는 고양이과 동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으며,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해 확인한 결과 삼고양이와 서벌의 교배종인 아프리카 사바나캣으로 판명
 - ②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에서는 음식점 테라스 주변을 배회하는 라쿤의 모습이 CCTV에 찍혀 화제가 됨. 유기되는 라쿤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지난해 8마리가 유기된 것으로 확인. 유기되는 라쿤의 증가에 따라 환경부는 6월 1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¹ 제1호로 지정
 - b. 야생동물 유기/유실 현황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유실 동물의 종에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등재된 미얀마 왕뱀, 뉴기니아 앵무 등도 포함
 - ② 2019년 유기/유실동물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135,791마리 중 외래 야생동물²은 472마리

¹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으로,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

²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페럿)과 농장동물인 염소 및 돼지 등은 제외. 단, 돼지 중 반려 목적의 미니피그와 닭(실키 종) 등은 포함

C. 관리부실에 따른 야생동물 복지 문제 발생

1) 야생동물 이용 영업의 확산과 관리 부실

- a. 야생동물을 전시나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기존 동물원과 수족관 외에도 야생동물카페, 실내동물원, 이동식 동물원 등으로 업종 및 업태가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 영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관리의 부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 부재. 등록 대상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경우에도 보유 생물에 대해 적절한 사육환경 기준 및 관리기준이 없어 열악한 사육환경 등의 문제 발생³
- b.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등록 및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야생동물을 수입·유통·판매하는 영업은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CITES) 협약’ 등에 의해서만 일부 제한. CITES에 해당하지 않거나 야생생물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종에 대해서는 수입·유통·판매에 있어 제재가 전무하며, 규모조차 파악 불가. CITES 종의 경우에도 불법으로 증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생물에 대해 정부가 몰수해야 하지만 보호 공간 등의 문제로 방치

2) 관리 부재 및 부실에 따른 야생동물 복지 저하

a. 비좁은 사육 공간

동물원수족관법에는 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이나 최소한의 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물원에서 좁은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전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올해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한 포천의 한 실내동물원에서는 아주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전시·사육하고 있었음. 자연에서 행동반경이 수십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좁은 공간에 사육하는 것은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³ 동물행복연구소 공존의 조사에서 ‘동물원수족관법’ 등록기준 미만의 소규모 동물전시 및 체험시설은 2018년 현재 전국 약 53개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좁은 사육장에 전시된 동물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정형 행동을 보이기도 함.

[그림 1] 좁은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는 호저



b. 단조로운 환경

제한된 공간에 갇힌 야생동물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생성을 유도하여 동물의 행동을 풍부하게 하는 행동풍부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한 다른 실내동물원에서는 암사자 한 마리가 나무나 공 등 행동풍부화를 위한 그 어떤 도구나 시설도 없는 좁은 우리의 시멘트 바닥에 무료하게 앉아 있었음. 이 동물원의 다른 우리도 상황은 비슷했고, 스트레스를 받은 일부 동물들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임.

[그림 2] 아무것도 없는 사육장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사자



c. 생태적 습성의 제약

동물원의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사람에게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인위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맞지 않음. 그러나 아직 여러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전시 동물에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 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는 동물 사육장 앞 유리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음. 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동물이 이 먹이주기 체험에 길들여져 구멍에 코와 입을 대고 사람들이 먹이를 넣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이 중 여우는 본래 육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체험 먹이인 당근에 집착적으로 반응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임. 뿐만 아니라 바닥이 시멘트로 덮여 있어 먹이를 땅에 묻거나 자유롭게 흙을 파헤치는 등의 여우의 기본 습성은 전혀 표출할 수 없는 상황

[그림 3] 당근을 기다리고 있는 육식동물 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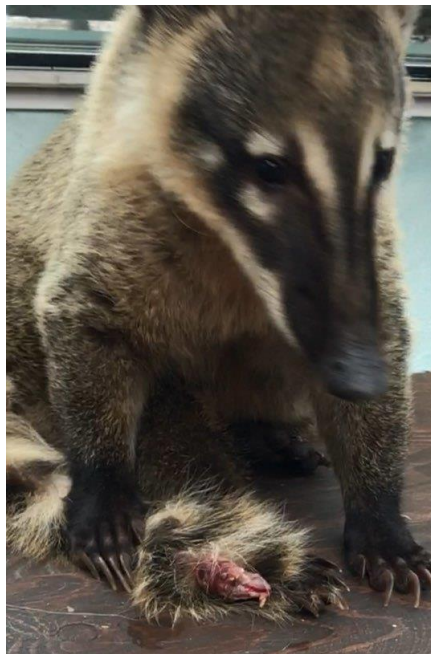


d.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미제공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은 1인 이상의 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비상근직 촉탁수의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실제로 동물원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상근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동물원은 많지 않음. 동물원에 수의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2017년 한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 폐사된 코아티는 온몸에 상해를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으며 당시 함께 사육되던 다른 코아티 역시 꼬리 전체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됨. 해당 동물카페는 코아티, 은여우 등을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함께 사육하였고, 상해 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그림 4] 상처를 입은 채 방치되어 있던 코아티



※ 출처 : 서울 마포구 모 야생동물카페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e. 사육 한계 상황에서의 방치 및 유기

야생동물을 사육하던 개인이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의 폐업 시 해당 야생동물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들이 발생. 2015년 일산의 한 식당에서 악어를 잡고 더러운 어항에 전시. 해당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 1급에 해당하는 삼 악어로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마주했을 당시에는 이미 외상으로 왼쪽 눈을 실명한 상태. 악어의 소유주인 식당 주방장은 악어쇼를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하게 되면서 악어를 마땅히 둘 곳이 없어 수조에 전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상 사육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악어를 방치한 것. 방치 뿐만 아니라 유기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폐업한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키우던 라쿤을 유기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와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대두. 결국 올해 5월 라쿤은 최초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됨.

[그림 5] 좁은 수조에 방치되어 있던 악어



[그림 6] 유기된 라쿤

공고번호	광주-서구-2020-00223	
품종	[기타축종] 라쿤	
색상	회,검	
성별	미상	
나이/체중	2017(년생) / 4 (Kg)	
접수일시	2020-05-30	
발생장소	서구 소방서	
특징	20-9014, 나이*성별 - 미상, 입양상담 가능	
공고기한	2020-05-30 ~ 2020-06-09	

2. 정책 동향

A.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지정

1) 주요내용

- a.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b.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 대상에 폭넓게 포함하여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예정
- c.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환경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 신고 필수
- d.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평가해 사전에 효과적 관리 기반 마련 목적

2) 관련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19. 10. 17.]

- a.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 평가 결과 국내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제2조)
- b.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토록 규정(제21조의2)
- c.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및 신고해야 함(제24조의2)

B.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조치 발표

주요내용

1) 야생동물 수입 검역 제도 도입

- a.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외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 시 허가·신고 대상 야생동물을 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로 확대
- b.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 법제화 추진. 동시에 야생동물이 수출입 될 수 있는 항만·공항 지정 및 통관 검사 강화 예정.

2) 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

- a. 현재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한 판매 규정 부재로 정확한 국내 야생동물 거래 현황 파악 불가
- b. '19년 3월 환경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연간 약 18,000마리의 야생동물이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 이에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및 야생동물 거래 관리 강화 발표
- c. 동시에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내 유통 전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 해외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 후 DB를 구축.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전체 유통경로 추적·관리 예정

[표 2] 야생동물 거래 현황 설문조사 결과⁴

구분	환경부 설문조사('19년 3월)	양서파충류협회 설문조사('19년 1월)
조사 대상	32개소	23개소
거래 현황	업체당 월 47마리, 연간 18,000마리	업체당 월 95건, 연간 26,000건

3) 야생동물 전시 규정 강화

- a. 현행법상 10종, 50마리 이상의 동물을 관람 목적으로 보유시 동물원으로 등록 가능.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내 동물원이나 체험형 동물원 난립. 10종, 50마리

⁴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국회토론회」 자료집 중 (환경부)

이하인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은 규제 불가

- b. 열악한 사육환경의 야생동물이 무방비 상태로 관람객에 노출, 질병 감염 위험 증가
 - c. 이에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계획
-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설립
- a.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의 지속적인 발병·확산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 전담 기관의 필요성 대두
 - b.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설립되었고, 올해 10월 정식 출범될 예정.
 - c.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의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등을 담당
- 5) 야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
- a.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는 사람과 야생동물 간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
 - b. 야생동물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 국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여우 등의 종복원 사업 진행
 - c. 서식지 중심의 보전, 관리 대책도 지속 강화와 함께 감염병 출현 원인으로 기후변화, 산림파괴, 밀집 가축 사육 등이 지목되는 만큼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복원이 질병 예방에 있어 중요 과제로 부상

3. 입법 동향

- A. 코로나19 사태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유통, 접촉 등을 관리하고 제한하기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발의(9월 11일 현재)

B.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강은미 의원	<p>1.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p> <p>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하거나(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학술 연구, 보호 및 증식 등의 이유로 포획)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한 야생동물(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판매 금지</p> <p>단, 학술 연구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이거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예외</p> <p>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야생동물 관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함.</p>

C.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이현승 의원	<p>1. 서식환경 기준 마련 근거 및 처벌조항 신설</p> <p>제6조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조항에 사육공간 포함 및 세부적인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이 폐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이상헌 의원	<p>1. 소규모 동물원 규정 신설</p> <p>관리사각지대에 있는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의 안전·보건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에 대해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p>

<p>맹성규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명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 증진을 명시 2. 휴·폐원시 보유 생물의 양도 규정 자금난 또는 인력난 등으로 휴·폐원을 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보유 생물의 보호나 보존을 위하여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가능. 운영자가 양도하지 않은 보유 생물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에게 해당 생물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p>정청래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명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 증진을 명시 2.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보유 생물, 사람의 안전을 과 보유 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유지,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구축 3. 운영자의 자격제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파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동물원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자(징역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3년 이내) 4. 검사관제 도입 강은미 의원의 발의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며, 형법 제129조로부터 제132조까지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적용시에는 공무원의 신분 적용

<p>박상혁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 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시 보유 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수립. 운영시에는 보유 생물의 질병 인수공통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해야 함 2. 체험행사의 제한 이용객 대상 동물과의 접촉, 먹이 급이 등 체험행사 금지(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외)
<p>강은미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 · 수족관 허가제 전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유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멸종위기종 및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생물의 관리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및 안전관리 △휴 · 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득해야 함 2. 검사관제 도입 시 · 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검사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 · 설비 등에 대한 검사 가능 3. 관람 목적의 체험과 훈련의 금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

4. 정책 및 입법 방향과 의의

A. 정책 및 입법의 주요 흐름

야생동물 관리 대책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발의안을 살펴보면 주요 흐름은 CITES종이나 야생생물법 상의 일부 종들을 제외하고는 번식·수입·유통·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했던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과 증식 제, 야생동물 관련 영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허가제 등을 통한 진입장벽 강화, 전시시설 및 생산·판매업장에서 적절한 사육환경의 제공과 관리기준 강화로 야생동물 복지 개선, 야생동물과의 접촉 등을 제한을 통한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등으로 압축

[표 5] 정책 및 법개정안별 야생동물 관리대책 방향

야생동물 관리대책 방향		관련 정책 및 입법발의안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 및 증식 제한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환경부) -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환경부)
야생동물 관련 영업 진입장벽 강화		-야생동물 전시 규정 강화(환경부) -야생생물법 개정안(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 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동물원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강은미, 정청래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운영자의 자격제한 / 정청래 의원)
야생동물의 복지 개선	적정 사육환경의 제공	-야생생물법 개정안(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 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검사관제 도입 / 강은미, 정청래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보유 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 박상혁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소규모 동물원 규정 신설 / 이상헌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서식환경 기준 마련 근거 및 처벌조항 신설 / 이현승 의원)

	<p>관리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법 개정안(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 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검사관제 도입 / 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관람 목적의 체험과 훈련 금지 / 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체험행사의 제한 / 박상혁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휴·폐원시 보유 생물의 양도 규정 마련 / 맹성규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소규모 동물원 규정 신설 / 이상헌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서식환경 기준 마련 근거 및 처벌조항 신설 / 이현승 의원)
<p>인수공통 감염병의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전시 규정 강화(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설립(환경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관람 목적의 체험과 훈련 금지 / 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보유 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 박상혁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체험행사의 제한 / 박상혁 의원)
<p>생태계 복원 및 위해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지정(환경부) -야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환경부)

B. 의의 및 기대효과

1)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

야생동물의 유입·유통·전시 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검역이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시행되어 검역 절차 없이 유입되던 파충류, 양서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신설하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예정. 또한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할 예정. 이를 통해 국내 야생동물 수입·반입 단계에서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입 후에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관리함으로써 야생동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

2) 무분별한 거래 제재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시 국내 야생동물 거래 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간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멸종위기종을 제외한 다른 야생동물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어 질병의 유무도 파악되지 않은 동물들이 거래되고, 심지어는 택배로 주고 받는 경우도 많았음. 판매업 허가제의 시행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의 거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3) 동물과 접촉 잦은 체험형 실내 동물원 제재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일상 속에서 야생동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함.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및 체험을 금지한다면 여러 종류의 동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고 직접 만질 수 있어 질병 감염의 위험이 높은 야생동물카페나 이동동물원 등 규제없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유사 동물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 또한 야생동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과제

A. 동물원 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현행법상 10종 이상 또는 50마리 이상의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보유하는 시설을 동물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제대로 된 사육 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은 곳들이 부지기수. 동물과 관람객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고 동물들의 은신처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은 체험형 실내 동물원도 존재. 이는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관람객에게는 질병 감염의 위험을 안겨줌. 동물원의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제 도입 시 사육 시설 기준, 체험 행위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 동물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질병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B. 개인의 야생동물 사육 제한

신종 감염병이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점을 통해 확산함에 따라 중간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질병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개인간 거래 및 개인 소유를 금지하여 접촉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음. 야생동물이 본래 습성을 빼앗긴 채 인위적인 장소에서 길러지는 기형적인 반려 문화 근절이 시급함.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곰, 악어, 라쿤, 스킨크 등의 개인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위험한 야생동물 종에 대해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당장 개인의 야생동물 사육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여 인수공통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를 제재할 필요는 있음.

C. 기존 야생동물의 관리 대책 마련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카페나 이동동물원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어야 함.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고 적절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으로 이주시키거나 이들을 위한 생츠퍼리를 건립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기나 밀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

D.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사람과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존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되어야 함. 야생동물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여기고 소비하기보다는 자연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자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일상에서 야생동물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인 동물원과 수족관 또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이색 동물들을 전시·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물을 보호, 치료, 재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참고 사이트]

<https://www.gov.kr>

<https://me.go.kr/>

<https://www.animal.g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22800017>

<https://m.medigatenews.com/news/411595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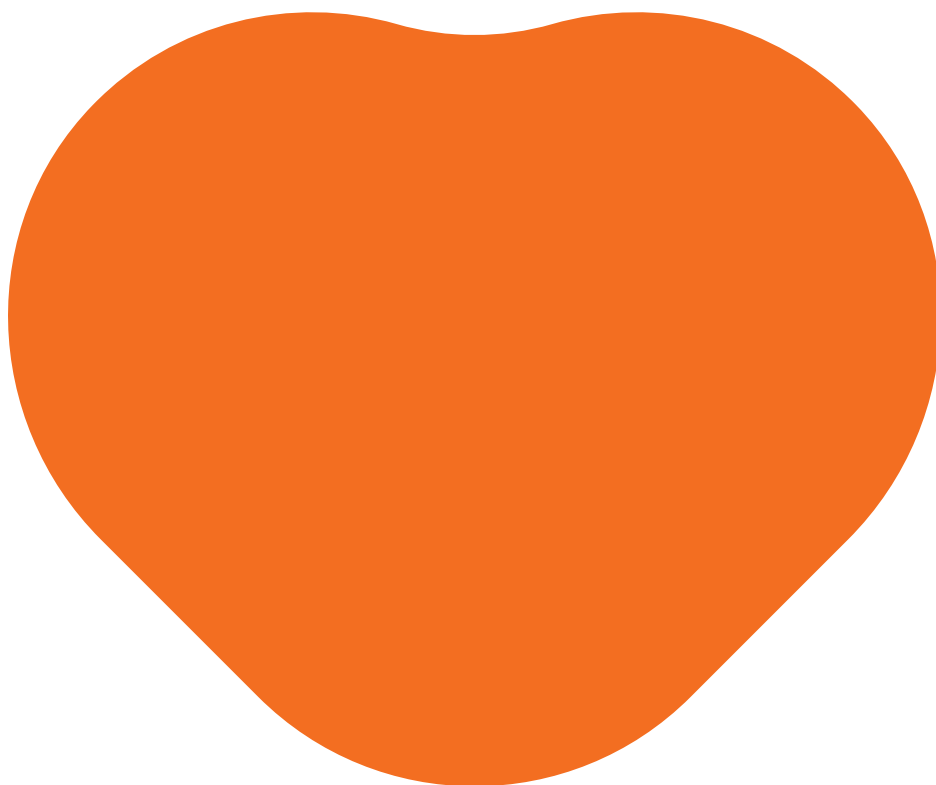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41798>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97377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02_0001082138#_enlipl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714113668515>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limate-change/qa-infectiousdiseases-who.pdf?sfvrsn=3a624917_3



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